# 인사규정

```
제정 2009. 7. 23
개정 2010. 11. 30
개정 2011. 7.21
개정 2011. 10. 26
개정 2013. 7.12
개정 2013. 12. 26
개정 2014. 2.26
개정 2014. 7. 4
개정 2014. 9. 5
개정 2014. 10. 29
개정 2015. 06. 30
개정 2015. 08. 17
개정 2015. 12. 30
개정 2016. 02. 25
개정 2016. 12. 22
개정 2017. 12. 20
개정 2018. 7. 6
개정 2018. 10. 23
개정 2018. 12. 21
개정 2019. 12. 20
개정 2020. 9.11
개정 2021. 4.20
개정 2021. 10. 12
개정 2021. 12. 27
개정 2022. 6.24
개정 2022. 12. 22
개정 2023. 7. 5
개정 2023. 10. 25
개정 2024. 2.21
```

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홍원(이하 "진홍원"이라 한다)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**제3조(직원의 구분)** ①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 및 공무직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8.12.21>

- ② 제1항의 일반직과 공무직은 직제규정 상의 정원 내 인력을 의미한다.<개정 2018.12.21>
- ③ 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며 계약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공무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8.12.21>
- 제4조(임면권자) 모든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## 제2장 채용

- 제5조(채용방법)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채용은 직무수행역량, 경력, 연구실적, 특수자격(면허증)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.<개정 2011.10.26>
  - ③ 직원의 채용자격기준과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6조(직원의 수습)** ① 원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습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21>
  - ② 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7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. <개정 2011.7.21>
  - 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개정 2011.7.21>
  - 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  - 3.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
  - 4. 진흥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
  - 5.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신설 2014.10.29.>
  - 6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<신설 2018.12.21>
- 제8조(전보) ① 직원의 전보는 본인의 능력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직원의 동일한 직무의 장기수행으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자질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장은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공무직은 해당 직무 외 전보를 제한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8.12.21>
  - ③ 제1, 2항의 "직무"란 과업의 종류와 수준이 비슷한 업무들의 집합을 의미한다.<개정 2018.12.21>

#### 제3장 승진

- 제9조(승진) ①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시행하며,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단, 공무직에 대하여는 승진을 적용하지 않는다. <개정 2018.12.21>
  - ② <삭제 2021.12.27.>
- 제10조(특별승진) 원장은 진흥원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결정할 수 있다.

## 제4장 복무

- 제11조(직책완수의 의무) 직원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책을 성실 하게 완수하여야 한다.
- 제11조의2(지시이행의 의무)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7.21>
- 제11조의3(직장 이탈 금지)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<신설 2011.7.21>
- 제12조(친절·공정의 의무)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품위유지의 의무) 직원은 진흥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비밀엄수의 의무)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무단히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손해배상의 의무)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**제16조(청렴의 의무)**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

- 제17조(겸업금지) ① 직원은 보수를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.
  - ② 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제18조(취업규칙) 직원의 복무기준, 근무시간과 근무조건, 휴일 및 휴가, 출장 및 파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8.10.23>

# 제5장 능률과 포상

- 제19조(능률증진을 위한 시책) 원장은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건, 휴양, 안전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.
- 제20조(교육훈련) ① 원장은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의 경우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③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21조(성과평가)** ① 모든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을 실시한다.<개정 2015.08.17>
  - ②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5.08.17>
- 제22조(포상) ① 진흥원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.
  - ②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23조(장기연수) ① 원장은 장기 근속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자로 하여금 신기술 및 전문분야의 경향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연수를 줄 수 있다.<개정 2013.12.26>
  - ② 장기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3.12.26>
- **제23조의2(연수)** ① 원장은 진흥원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국내외 연수기회를 줄 수 있다.<신설 2011.7.21>
  - ② 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1.7.21>

# 제6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

- 제24조(의사에 반한 신분조치) 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, 면직 또는 대기명령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7.21>
- 제25조(휴직)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2.30.>
  - 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(불임·난임 치료를 포함)<개정 2017.12.20.>
  - 2. <개정 2011.7.21.><삭제 2014.9.5.>
  - 3. 병역법 또는 전시동워법에 의하여 징집, 소집 또는 동워되었을 때
  - 4. 천재지변,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할 때
  - 5. <삭제 2011.7.21>
  - 6. <삭제 2011.7.21>
  - 7. <삭제 2011.7.21>
  - 8. <삭제 2011.7.21>
  - 9. <삭제 2011.7.21>
  - 10. <삭제 2011.7.21>
  - 11. <삭제 2011.7.21>
  - ②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7.21>
  - 1.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 요하게 된 때.<신설2011.7.21.><개정 2014.7.4., 개정 2019.12.20., 개정 2021. 10. 12.>
  - 2.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<개정 2024. 2. 21.>
  - 3. 국제기구, 국외기관, 공직, 국내외 공공기관·대학·연구기관 또는 원장이 정하는 민 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<신설 2011.7.21.><개정 2013.12.26., 2014.2.26>
  - 4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<신설 2011.7.21.><개정 2019.12.20 >
  - 5. <삭제 2015.12.30.>
  - 6. 외국에서 근무·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<신설 2015.12.30.>
  - 7.5년 이상의 근속자가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때<신설 2017.12.20.>

- 8. 2년 이상의 근속자가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분사하게 된 때 <신설 2019.12.20.>
-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신설 2011.7.21.><개정 2015.12.30., 2024.2.21.>
- ④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개정 2016. 02.25>

## 제26조(휴직기간) 제25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개정 2011.7.21., 2015.12.30., 2017.12.20.>
- 2.<개정 2011.7.21.><삭제 2014.9.5.>
- 3.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징집, 소집 또는 동원되어 복무를 완료한 날까 지로 한다.<개정 2011.7.21., 2015.12.30.>
- 4.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1.7.21.>
- 5. <삭제 2011.7.21>
- 6. 제25조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하며, 6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단,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</li>
  02.25., 2019.12.20., 2020.09.11., 2021.10.12., 2021.12.27.>
- 7. 제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21., 2015.12.30.>
- 8. 제25조제2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공직의 경우 인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5.12.30.>
- 9. 제25조제2항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동 휴직기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포함된다. <개정 2011.7.21., 2019.12.20.>
- 10. <삭제 2015.12.30.>
- 11. 제25조제2항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최초휴직 이후 재직기간 10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<신설 2017.12.20.><개정 2024. 2. 21.>
- 12. 제25조제2항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<신설 2019.12.20.>
- 13. 제25조제2항제6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<신설 2024. 2. 21.>

제27조(휴직의 효력) ① 휴직 중인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다만, 원장은 필요한 경우 유급휴직 직원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- ③ 제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과 제2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최초 1년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.<개정 2011.7.21., 2016. 02.25>
- ④ 무급휴직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8조(면직) 면직은 당연면직,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.

제29조(당연면직)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.

- 1. 제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
- 2.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- 3. 정년이 되었을 때
- 4. 사망하였을 때
- 5. 진흥원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. 다만, 정관 제4조제1항제2호의 노동이사로 선임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2. 12. 22.>
- 제30조(직권면직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  - 1. 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
  - 2. <삭제 2011.7.21>
  - 3. 직제의 개폐,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
  - 4.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
  - 5.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<개정 2018.7.6.>
  - 6.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
  - 7.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
  - 8.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
  - 9. 채용 비리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신설 2018.7.6.)
- 제31조(의원면직) ①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 2010.11.30>
  - ② 원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전까지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신설 2010.11.30>

- 1.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<신설 2010.11.30.><개정 2013.7.12>
- 2. 내부 감사실 또는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,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<신설 2010.11.30.><개정 2013.7.12>
- 제32조(명예퇴직) ① 원장은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정년이 1년 이상인 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.<개정 2016.12.22>
  - 1.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  - 2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  - 3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
  - 4. 진흥원의 자회사 또는 정부의 다른 산하단체에 재취업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자
  - 5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횡령 및 유용, 배임 등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<신설 2014.10.29>
  - 6. 기타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 없는 자<개정 2014.10.29>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.
  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신청, 승인 및 기타 명예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3조(임금피크제) ① 원장은 고령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신규직원 채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. 단, 공무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다.
  - ②직원이 제35조의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.<개정 2015.08.17., 2018.12.21>
  - ③ <삭제 2015.08.17>
  - ④ <삭제 2015.08.17>
  - ⑤ 기타 임금피크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4조(대기명령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를 면하고 3개월 이내(단, 비위행위로 인한 형사기소의 경우 형 확정 전까지) 대기를 명할 수 있다.<개정 2014.9.5.>
  - 1.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. 다만, 이 경우 원 장은 해당직원의 능력회복,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 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2. 비위행위로 인한 형사기소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 또는 징계요구 중인

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개정 2014.9.5., 2023. 7. 5.>

- 3.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상급자로 지휘감독소홀로 연대책임이 있는 자
- 4.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·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<신설 2023. 7. 5.>
- ② <삭제 2011.7.21>
- ③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이 그 대기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**제35조(정년)**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 다만, 고령자친화직종인 미화직무 공무 직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 <개정 2020.09.11>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면직된다.

## 제7장 징계

- 제36조(장계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계처분을 행한다.
  - 1. 관계법령, 진흥원의 제규정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<개정 2011.7.21>
  - 2. 직무상의 의무(다른 법령에서 공직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) 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<개정 2011.7.21>
  - 3. 진흥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- 4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
  - 5. 소극행정 <신설 2024. 2. 21.>
- 제36조의2(장계 절차) ①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 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징계요구서에 명기한다.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[별표 제1호] 금품·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, [별표 제6호] 징계양정기준, [별표 제7호] 음주운전 징계기준, [별표 제9호] 채용비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,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1.7.21.><개정 2016.12.22..., 2019.12.20>
  - ②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로 하여금 추가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<신설 2011.7.21>

-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비위의 유형·정도, 과실의 경중,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, 근무성적, 공적,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7.21>
-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청이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1.7.21., 개정 2023. 7. 5.>
- ⑤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신설 2023. 7. 5.>
- ⑥ 징계요구 및 의결 절차와 징계양정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1.7.21>

# 제37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파면 :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하며, 재채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2.22>
- 2. 정직 :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의 전액을 감한다.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6.12.22., 2021.12.27>
- 3. 감봉 : 월 급여의 10% 이하를 감급하되, 1회의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이하로 하고,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6.12.22>
- 4. 견책 :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- 5.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, 중징계란 파면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. <신설 2016.12.22>
- 제37조의2(정계의결) ①인사위원회는 정계를 의결하는 경우,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, 인사위원장을 제외한 인사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. 단. 원장이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할수 있다.<개정 2014.9.5.>
  -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,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의결된 것으로본다. 다만 파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.<신설 2011.7.21.><개정 2014.2.26., 2014.9.5., 2016.12.22., 2023. 10. 25>③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제외하고, 각호의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. 단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징계 당사자의청구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2.22>
  - 1. 인사위원회의 회의록
  - 2. 인사위원회 위원의 명단
  - 3. 인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(전자 기록물 포함)
  - 4.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

는 사항

- ④ 제2항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,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<신설 2016.12.22>
- ⑤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,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. <신설 2016.12.22>
- ⑥ 인사위원회는 정계의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2.22>
-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감사기관과 협의 후 연장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2.22>
- 제37조의3(정계처분기록의 말소) 원장은 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7.21>
  - 1.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. 다만,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7.21>

가. 정직 : 7년

나. 감봉 : 5년

다. 견책 : 3년

- 2.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<신설 2011.7.21.>
- **제37조4(징계양정 기준)** ① 징계양정은 객관적 증거나 징계대상자의 자백 또는 인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.
  - ② 삭제 <2023. 7. 5.>
- 제37조의5(금품·향용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) 원장은 금품·향용 수수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[별표 제1호]에 따른 금품·향용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9.5.]

- 제37조의6(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) ①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[별표 제6호]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  -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처분은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 다

- 만,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가 가능하다.
- 1. 직상위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
- 2. 차상위자,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

[본조신설 2014.9.5.]

- 제37조의7(성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) ①원장은 임직원이 성폭력,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의2(징계 절차)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  - ②인사위원회는 [별표 2호] 및 [별표 제6호]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 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9.5.]

- 제37조의8(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징계처분) ①원장은 임직원이 거짓정보 공개, 정보 숨기기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를한 경우 제36조의2(징계 절차)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②인사위원회는 [별표 제3호]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4.9.5.]
- 제37조9(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)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[별표 제4호]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[별표 제4호] 문책기준 중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·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
  - 2.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
  - 3.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

[본조신설 2014.9.5.]

제37조의10(정계의 감경) ① 인사위원회는 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[별표 제8호] 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정계를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2>

- 1. 기관장 표창(팀장급 이상은 제외)을 받은 공적
- 2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
- 3. 「정부표창규정」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
- 4. 중앙행정 기관장(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),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감경에 있어서 견책은 경고함으로써 그 감경을 대신하다.
- ③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.
- ④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.<개정 2016.12.22>
- 1.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
- 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성폭력범죄
- 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
- 4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
- 5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른 연구부정행위<신설 2019.12.20>
- 6. 채용비위<신설 2019.12.20>
- 7.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<신설 2021.12.27>
- ⑥ <삭제 2019.12.20>
-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,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.<신설 2014.9.5., 개정 2016.12.22>
- 제37조의11(징계처분에 따른 제한) ①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직 및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,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유용, 음주운전(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), 성폭력, 성희롱 및 성매매,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은 6개월을 가산한다.<신설 2014.9.5., 개정 2016.12.22., 2019.12.20., 2021.12.27., 2023. 7. 5.>

1. 정직 : 18개월

2. 감봉 : 12개월

3. 견책 : 6개월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.<신설 2016.12.22>
- 1. 징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

사람

- 2.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
- 3.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- 4.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- ③ 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유용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보 조치 및 청렴교육 등 필요한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.<신설 2016.12.22.>
- ④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.<신설 2019.12.20.>
- 1. 정직 이상 3년
- 2. 정직 미만 2년
- 제37조의12(보안준수 의무 불이행 징계처분) ①원장은 임직원이 보안준수 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제36조의2(징계 절차)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.
- ②인사위원회는 [별표 제6호]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5.6.30.]
- 제37조의13(장계의 가중) ①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있다.
  -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직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제한기간이 끝나더라도 3년이내(제38조 각호의 사유의 경우 5년) 동일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7.12.20.]
- 제37조의14(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문책기준) 원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의2 제1항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문책하는 경우 [별표 제10호]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문책 기준을 따른다. [본조신설 2021.4.20.]
- **제38조(징계사유의 시효)**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30> <개정 2016.12.22>
  - 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
  - 2. 공금 및 기관 자산의 횡령, 배임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
  - 3. 채용비위 <신설 2023. 7. 5.>
  - ② 제36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

- 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23. 7. 5.>
- ③ 인사위원회 등의 구성, 징계의결 등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<신설 2023, 7, 5.>
- 제39조(재심청구)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21>
  -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징계의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1.7.21>
  - ③ 재심청구는 서류 등 요식행위 결여 등을 이유로 기각되거나 접수가 거부될 수 없다.<신설 2011.7.21>
  -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징계의 결을 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<신설 2011.7.21.> <개정 2016.12.22> ⑤ 인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시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의결을 하지 못한다.<신설 2011.7.21.>
  - ⑥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. 다만, 재심에 의하여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. <신설 2016.12.22>
- 제40조(진술권) ①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진술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, 증인의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21>
  - ② 징계요구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신설 2011.7.21>
- 제41조(통고) 원장은 징계처분된 사유와 징계내용을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.
- 제41조의2(부패행위자 공개) 원장은 징계 확정시(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시)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기간별로 대외에 공개하여야한다. 단, 적극적 행정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징계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16.12.22>

#### 제8장 보칙

제42조(인사위원회 설치) ①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

도록 인사위원회를 둔다.

-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43조(파견) ① 원장은 업무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당해 유관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1.7.21> ②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부처 또는 기관의 직원(이하 "파견원"이라 한다)을 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11.7.21.>
- **제44조(시행규칙)**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(임금피크제)는 근로기 준법 제94조(규칙의 작성, 변경절차)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0.11.30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1.7.21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1.10.26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3.12.26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4.2.26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4.7.4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4.9.5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4.10.29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5.6.30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5.8.17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5.12.30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**부 칙<2016.02.25>** 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6.12.22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7.12.20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8.07.06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8.10.23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18.12.21.>

제1조(적용유예) 12월 31일 전환대상으로 확정된 공무직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35조를 적용한다.

제2조(미화공무직의 정년) 제35조에도 불구하고 「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공무직(종전 위탁용역 용역근로자에 한함)으로 전환 채용된 미화공무직은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.

# 부 칙<2019.12.20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1.4.20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1.10.12>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1. 12. 27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표 제7호]의 개정규정은 관련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22. 6. 24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<2022. 12. 2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다만,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노동이사인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정관 승인을 인가받은 날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<2023. 7. 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다만, 제36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본 규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 우와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이미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부 칙<2023. 10. 25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4. 2. 21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 <신설 2014.9.5.> <개정 2014.10.29.> <개정 2015.08.17.> <개정 2016.12.22.> <개정 2021.12.27>

금품・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

|  | 100만원 | 원 미만  |          |
|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금품·향응 등<br>재산상 이익<br>비위유형  | 샹     | 뚕     | 100민원 이상 |
| 위법·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| 정직-감봉 | 파면-정직 | 파면−정직    |
|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<br>거나 제공하였으나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<br>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| 파면-정직 | 파면-정직 | 파면       |
|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<br>거나 제공하고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<br>한 경우               | 파면-정직 | 파면    | 파면       |

## ※ 비고

- 1. "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"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2. "직무관련자"와 "직무관련임직원"이란 「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임직원을 말한다.

#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

| 비위의 정도 및        | 비위의 정도가 | 비위의 정도가   | 비위의 정도가  | 비위의 정도가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심하고 고의가 | 심하고 중과실이  | 심하고 경과실  | 약하고 경과실 |
| 과실 여부           | 있는 경우   | 거나, 비위의   | 이거나, 비위의 | 인 경우   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정도가 약하고   | 정도가 약하고  |         |
| 비위의 유형          |         | 고의가 있는 경우 | 중과실인 경우  |         |
| 1. 성폭력범죄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가.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 | 파면      | 파면        | 파면-정직    | 정직      |
| 대상 성폭력범죄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나. 업무상 위력 등에    | 파면      | 파면        | 파면-정직    | 정직      |
| 의한 성폭력범죄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다. 공연(公然)음란행위   | 파면      | 파면        | 정직       | 감봉      |
| 라. 통신매체를 이용한    | 파면      | 파면        | 정직       | 감봉      |
| 음란행위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마. 카메라 등을 이용한   | 파면      | 파면        | 정직       | 감봉      |
| 촬영 등 행위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바. 가목부터 마목까지    | 파면      | 파면        | 정직       | 감봉-견책   |
| 외의 성폭력범죄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  | 파면      | 파면        | 정직       | 감봉-견책   |
| 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| 파면      | 파면-정직     | 정직-감봉    | 견책      |
|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성매매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
## ※ 비고

- 1. 제1호에서 "성폭력범죄"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.
- 2. 제1호 나목에서 "업무상 위력 등"이란 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.
- 3. 제1호 라목에서 "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"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」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4. 제1호 마목에서 "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"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# [별표 제3호] <신설 2014.9.5.>

#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징계양정기준

| 비위의 정도 및<br>과실 여부<br>비위의 유형 | 비위의 정도가<br>심하고 고의가<br>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<br>심하고<br>중과실이거나,<br>비위의 정도가<br>약하고 고의가<br>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<br>심하고<br>경과실이거나,<br>비위의 정도가<br>약하고 중과실인<br>경우 | 비위의 정도가<br>약하고,<br>경과실인 경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보공개 의무<br>불이행              | 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   | 견책   | 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|

[별표 제4호] <신설 2014.9.5.><개정 2016.12.22>

#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

|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| 비위행위자<br>(담당자) | 직상감독자 | 차상감독자 | 최고감독자<br>(결재권자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정책   | 중요사항<br>(고도의 정책사항) | 4              | 3     | 2     | 1               |
| 결정사항 |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  | 3              | 1     | 2     | 4               |
| 단순   | 중요사항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| 2     | 3     | 4               |
| 반복업무 | 경미사항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| 2     | 3     |                 |
| 1    | 단독행위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| 2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

※ 1, 2, 3,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(문책강도 1 > 2 > 3 > 4)

[별표 제5호] <신설 2015.6.30.> <삭제 2016.12.22>

# 징계양정기준

|  | <u> 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0 / 1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비위의 정도 및<br>과실 여부<br>비위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위의<br>정도가<br>심하고<br>고의가 있는<br>경우 | 바위의 정도가<br>심하고<br>중과실이거나,<br>비위의 정도가<br>약하고 고의가 | 바위의 정도가<br>심하고<br>경과실이거나,<br>비위의 정도가<br>약하고 | 비위의<br>정도가<br>약하고,<br>경과실인<br>경우 |
|  | 0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있는 경우   | 중과실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성실의무 위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 </u>  | 0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공금횡령·유용, 업무상<br>배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| 파면-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-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| 정직  | 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<br>서 문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| 정직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.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의무 불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  | 정직-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.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<br>따른 부당한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| 정직  | 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바. 성 관련 비위 또는 임직원<br>행동강령 제21조의2의 부당한<br>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| 정직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치를 하지 않은 경우<br>사.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<br>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| 정직  | 감 <del>봉</del> -견책               |
| 아. 기 타<br>2.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  | 감봉  | 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<br>이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| 정직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무단결근<br>다. 기 타  | 파면<br>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−정직<br>정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-감봉<br>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견책<br>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친절·공정의무 위반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  | 감봉  | 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비밀의 누설·유출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| 정직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<br>단유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-정직   | 정직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비밀 분실 또는 해킹<br>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<br>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  | 정직-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. 개인정보 무단조회·열<br>람 및 관리 소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  | 감봉  | 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비위의 정도 및<br>과실 여부<br>비위의 유형 | 비위의<br>정도가<br>심하고<br>고의가 있는<br>경우 | 바위의 정도가<br>심하고<br>중과실이거나,<br>비위의 정도가<br>약하고 고의가<br>있는 경우 | 바위의 정도가<br>심하고<br>경과실이거나,<br>비위의 정도가<br>약하고<br>중과실인 경우 | 비위의<br>정도가<br>약하고,<br>경과실인<br>경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마.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<br>위반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   | 감봉   | 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 청렴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| 정직   | 감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.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. 성 관련 비위                  | 별표 제2호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음주운전                     | 별표 제7호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   | 감봉   | 견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- 금품·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[별표 제1호]를 따른다.
-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[별표 제7호]를 따른다.
- 제1호 사목에서 "피해자 등"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, "2차 피해"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3호가목・나목에 따른 피해(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) 및 피해 발생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, 2차 피해가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호 가목을 적용한다.

# 음주운전 징계기준

|  | 음주운전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준    | 비고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 | 혈중알코올농도기<br>미만인 경우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정직-감봉   | 1. "음주운전"이란 「도로교통<br>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<br>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     |
| 최초 음주<br>운전을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혈중알코올농도기<br>이상 0.2퍼센트 [        | h 0.08퍼센트<br>미만인 경우 | 정직      | 한다.<br>2. "음주측정 불응"이란 「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우   | 혈중알코 <del>올농</del> 도가 ()<br>경우 | .2퍼센트 이상인           | 파면-정직   | 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       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                     |
|  | 음주측정 불응의                       | 경우                  | 파면-정직   | 을 말한다.<br>3. "운전업무 관련 직원"이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회 음주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- 정직 | 운전직류 등 운전을 주요 업<br>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. 다                        |
| 3회 이상 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주운전을 한 경                      | 우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| 만,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<br>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| 로 운전면허가 정?<br>2전을 한 경우         | 지 또는 취소된            | 정직      | 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<br>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<br>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        |
|  | 로 운전면허가 정<br>유주운전을 한 경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- 정직 | 리기준을 적용한다. 4.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              |
|  | 상해 또는 물                        | 적 피해의 경우            | 파면 - 정직 |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<br>  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<br> 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 |
|  | 사망사고의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우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| 전부터 산정한다.  |
| 음 주 운 전 의<br>인적 • 물적 피<br>있는 교통사<br>일으킨 경우 | 해가<br>고를 사고 후 「도로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- 정직 |  |
|  | 따른 조치를<br>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파면      |  |
|  | 관련 면허취소 처분                     | 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 | 파면      |  |
| 직원이 음·<br>전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을 받은 경우            | 파면 - 정직 |  |

# [별표 제8호] <신설 2016.12.22.>

# 징계의 감경기준

| 제37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| 제37조의10에 따라 감경된 징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파면                 | 정직                 |
| 정직                 | 감봉                 |
| 감봉                 | 견책                 |
| 견책                 | 불문(경고)             |

# 채용비위 처리 기준

# □ 채 용

| 구 분<br>비위유형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자가 채용:          | 관련자가<br>채용된 경우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
| 응시·자격 요건 미확인 <sup>1)</sup>        | 경과실               | 고의·중과실         | 중징계   |
| 등시 사각 요간 미획인가                     | 주의·경고             | 경징계            | ਠਿੰਟੀ |
| 지하다에서 지스템이 범지지                    | 경과실               | 고의·중과실         | 7 T   |
|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<br>                | 주의·경고             | 경징계, 중징계       | 중징계   |
| 채용공고 후 응시·자격 요건<br>임의(변경절차 미이행)변경 | 경징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중징계   |
| 레요저쉬?) 미즈스                        |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) 미준수 |                | 즈지게   |
| 체용절차 <sup>2)</sup> 미준수            | 경징계               | 중징계            | 중징계   |

| 구 분<br>비위유형  | 경과실 | 고의·중과실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 | 경징계 | 중징계    |
|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| 경징계 | 중징계    |

<sup>\*</sup> 경과실 사안이라 하더라도 3회(건) 이상 중복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중징계

# □ 정규직 전환

| 구 분비위유형   | 경과실 | 고의·중과실 |
|---|-----|--------|
|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4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징계 |        |
| (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)<br>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| 경징계 | 중징계    |
|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,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                    | 경징계 | 중징계    |
| 전환평가 과정5)의 부적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징계 | 중징계    |

<sup>1)</sup> 응시·자격요건 미확인 : 학위·자격증·경력·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

<sup>\*\*</sup>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

<sup>2)</sup> 관계 법령, 상위 지침,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

<sup>3)</sup> 채용공고, 서류·면접 전형위원 구성,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의 준수,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

<sup>4)</sup> 재직자/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) 특혜, 부정청탁,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 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

<sup>5)</sup>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,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

#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문책 기준

| 관련법령 | 위반 의무  | 문책유형     |
|------|--|----------|
|      | ① 작업설비 등 고장(규칙 제9조 등)                        | 정직-감봉    |
|      | ② 안전시설 미비, 부적절, 고장(규칙 제21조 등)                | 정직-감봉    |
|      | ③ 안전(방호)장치 미비, 부적절, 고장, 해제(규칙 제12조 등)        | 정직-감봉    |
|      | ④ 작업지휘자·감시자 미배치, 부적절(규칙 제39조 등)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(규칙 제37조 등)                       | 파면-정직    |
|      | ⑥ 대피조치 미흡, 부적절(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)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⑦ 공사기간 단축·공법변경 금지의무(법 제69조제1항·제2항)_도급인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⑧ 설계변경·변경요청의무(법 제71조제3항 후단)_도급인 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⑨ 비상구·소화설비 미비, 부적절, 고장(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)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⑩ 경보, 구호설비 미비, 부적절, 고장(규칙 제11조제4호 등)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⑪ 위험기계·기구 안전검사 미수검(규칙 제36조 등)                | 정직-감봉    |
|      | ⑫ 작업계획·점검 미실시, 부적절(규칙 제38조제1항 등)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③ 작업방법 부적절(규칙 제38조제3항 등)  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⑭ 작업시간·기간 불충분(규칙 제421조제1항 등)    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⑤ 무자격자·미숙련자 작업배치(규칙 제318조 등)                 | 정직-감봉    |
| 산업안전 | ⑯ 작업지시·신호 미실시, 부적절(규칙 제40조 등)   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보건법  | ☞ 작업장(위험장소) 출입·이동방법 부적절(규칙 제11조 등)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® 작업설비 등 용도 외, 부적절 사용(규칙 제96조 등)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⑲ 안전교육 미실시, 부적절(규칙 제89조 등)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②》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(법 제70조제2항후단)_도급인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②)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 (법 제64조제1항제5호)_도급인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②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·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(법 제65조제1항)_도급인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② 보호구 미지급, 부적절, 고장(규칙 제6조제2항 등)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② 안전표지 등 견책표시 미비, 부적절(규칙 제11조제5호 등)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☺️ 보호구 미착용, 성능 미달 보호구(규칙 제6조제3항 등)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⒀ 작업수칙·지시 위반(규칙 제436조 등)         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② 전도 방지 미조치(규칙 제3조 등)           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⑱ 공사기간 단축·공법변경 금지의무(제69조 제1항·제2항)            | 감봉-견책    |
|      | ❽ 설계변경의무(제71조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③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(제70조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③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(제68조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|      | ❽ 안전보건대장 작성, 제공, 확인의무(제67조제1항)               | 견책−주의·경고 |

| 관련법령                       | 위반 의무   | 문책유형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건설기술<br>진흥법                |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 | 견책 – 주의·경고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 | 정직-감봉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 | 감봉-견책      |
| 건설산업<br>기본법                |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  | 견책-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건설공사<br>안전관리<br>업무수행<br>지침 |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전기<br>공사업법                 |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감봉-견책      |
| 전기<br>사업법                  |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 | 정직-감봉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(사업용·자가용)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⑦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(일반용)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⑧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⑨ 제73조의8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⑩ 제73조의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견책-주의·경고   |
| 전력기술<br>관리법                |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·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감리원 배치 신고,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견책 -주의·경고  |
| 정보통신<br>공사업법               | 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 | 견책−주의·경고   |
| 소방시설<br>공사업법               | 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감봉-견책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|            |
| 대형사고<br>등                  |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<br>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<br>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| 파면         |